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2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1월 23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안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 없음)

지정 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	종로구 옥인동 47-64번지 외 257필지	30,428	-	30,428	

나. 정비계획 수립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30,428	-	30,428	100.0	
정비기반 시설	소 계	3,527	-	3,527	11.6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없음)
	도 로	787	-	787	2.6	
	공 원	2,740	-	2,740	9.0	도시자연공원(경계변경) ±51.6㎡(1.4%)
택 지	소 계	26,901	-	26,901	88.4	
	택 지	26,901	-	26,901	88.4	공동주택부지 등

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
나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

결정구분	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증(감)	변 경	
도시계획시설	변경	인왕산 도시자연 공원	도시 자연 공원	옥인동 47-512 일원	1,782,834.5 (2,004)	-	1,782,834.5 (2,004)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없음) ±51.6㎡
	기정	-	소공원 ①	신교동 6-30 일원	446	-	446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		-	소공원 ②	옥인동 47-228 일원	290	-	290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
5)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 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비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·공급	구역지정고시 후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	종로구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현 황	307세대 (세입자포함)	· 이상 없음 (홍수 및 강우시 피해방지대책수립) - 용량분석을 통한 적정한 우·오수관을 설치 · 우수유출량이 최대한 억제 : 포장률억제 - 하수구의 정기적인 토사 제거)	전면 개발
			기 정	(+3세대) 310세대		
			변 경	(-7세대) 300세대		

2. 관련서류

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주택과(☎731-140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끝.